

거주자우선주차장 신설 구간 이용 신청 공고

마포구 공영주차장 수탁 관리운영자인 우리공단은 다음과 같이
거주자우선주차장 신설구간의 이용 신청을 공고합니다.

1. 대상 주차장 : 한국다원호간보 부설주차장 신설 주차면 9면(장애인주차장 2면 포함)
- 주소 : 마포구 방울대로 83 (망원동 473-3, 행정동 - 망원동)
- 위치 : 따로붙임1 지도 참조
2. 신청 대상 : 마포구 관내 거주자·사업자(재직자 포함)의 자동차 소유자 등
※ '거주자'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마포구 관내인 사람을 말함.
※ 주차차 위반 과태료(3회 이상)와 자동차세 및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 관련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, 주차장 불법 개조자(체납 등의 기준일은 공고일로 함)는 우선배정 제외되므로 배정 및 주차요금 납부 후라도 체납(미이행)이 확인되면 배정 취소함.
3. 배정 일정

이용 신청기간	배정 발표일시	주차료 납부기간	주차장 이용기간(유료)
2020.8.12. ~ 2020.8.25. (14일간)	2020.8.26.14:00 (공단 홈페이지)	2020.8.26. ~ 31. (고지서, 인터넷)	2020.9.1. ~ 2021.03.31. (이후 6개월 단위로 재심사 배정)

- ※ 배정자는 별도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인터넷으로 개별 확인하거나 공단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함.
※ 신청 구간에 배정되지 않은 경우 주변 여유 구간에 배정 가능한지를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음.
4. 배정기준 및 조건 : 따로붙임 2 '배정 기준 및 조건' 참조
 5. 신청방법 : 공단 방문(단, 평일 09:00~18:00 한정), 또는 팩스(☎02-376-4068)로 신청하거나, 인터넷(<http://eparking.mfmc.or.kr>)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(단, 구비서류는 팩스로 별도 제출)
 6. 신청구비서류(각1부)
가. 필수 제출(공통 구비) 서류 : ①신청서 ②자동차등록증 사본 ③주민등록표 초본
(주소변동 내역 포함하여 발급 받되 마포구 관내 최종 전입일 확인이 가능해야 함)
※ 비거주자인 관내 사업자(재직자)는 사업자등록증 사본(재직자는 재직증명서)
나. 상이국가유공자, 장애인, 저공해 자동차 등 해당자 : 관련증빙 자료(신청서 참조)
 7. 신청 구분 및 주차요금(관련 조례에 따라 할인 대상자에게는 할인 적용)

구분		야간(19:00~익일08:00)	비 고
주차요금 (월정액)	시설	2만4천원 (야간주차만 가능)	이용시간 이외 주차시 10분당 1,000원 요금 별도부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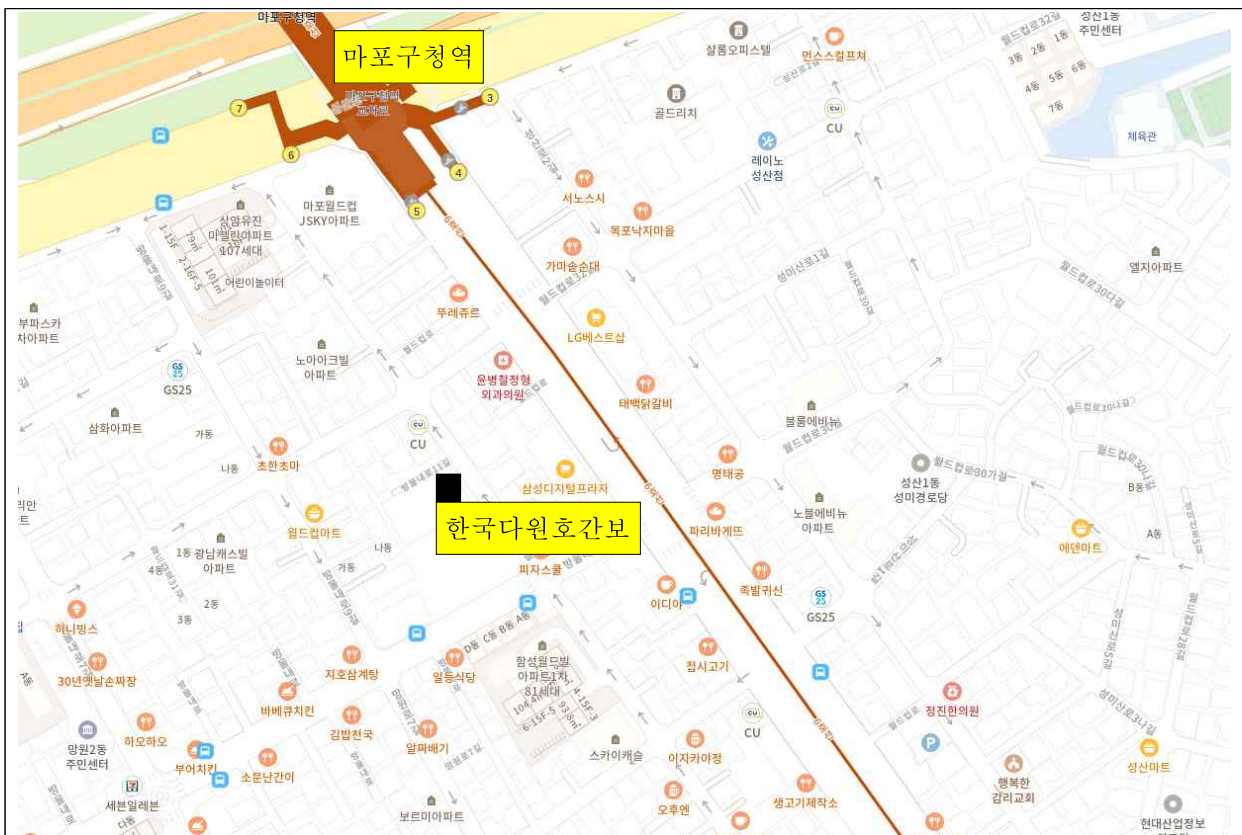
8. 그밖에 신청 요령, 배정기준·조건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거주자주차팀(☎ 02-300-5042~5045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끝.

2020. 8. 12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



주차장 진출입로



지도

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기준 및 조건

1. 배정 기준

- 가. 배정방법 : 신청 자동차(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 기준) 및 거주 정보(주민등록 기준)를 기초로 아래 '배정표'상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배정
- 나. 배정대상 : 정기 신청기간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기 배정
- ※ 정기 배정 이후에는 여유분 발생 시 수시 배정
- 다. 배정 우선순위(우선순위별 고득점 순으로 배정)
- 1순위 : 배정(신청)일 현재 신청 동(洞) 내 거주하는 장애등급 1~3급(시각장애인은 1~4급), 상이 국가 유공자,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 고도장애 및 중등도장애자 중 고득점 순
※ 동점 시 우선순위 : ①장애등급이 높은 자 ②관내 전입일이 이른 자
 - 2순위 : 1순위 우선 배정 후 마포구 관내(이하 '관내') 거주자 중에서 고득점 순
※ 동점 시 우선순위 : ①관내 전입일이 이른 자 ②자동차 배기량 이 적은 자동차
 - 3순위 : 2순위 배정 후 비거주자(관내 사업자·재직자) 중 고득점 순
※ 동점 시 우선순위 : ①관내 사업개시일(재직자는 그 사업장 재직 시기)이 이른 자 ②자동차 배기량이 적은 자동차

<표 1> 배점표

항목								점수	확인방법	
거주자	① 거주자 거주기간(관내 최종 전입일 기준) 점수							20 이하	주민등록표 초본 (관내 최종 전입일)	
	거주 기간	1년 미만	1년 ~2년 미만	2년 ~3년 미만	3년 ~4년 미만	4년 ~5년 미만	5년 ~10년 미만			10년 이상
	점수	3	5	7	10	13	15	20		
거주자	② 거리 점수(거주지와 주차구획의 거리 기준)							15 이하	공단 관리 프로그램	
	거리	10m 미만	10m ~30m 미만	30m ~50m 미만	50m ~100m 미만	100m 이상				
	점수	15	10	7	3		0			
차종별 (공통)	① 경차(배기량 1000cc 미만)							5	자동차등록증	
	② 소형차(배기량 1000cc 이상 ~ 1600cc 미만)							2		
특별 가점 (공통)	①상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1~3급(시각장애인은 1~4급) ②고엽제 후유의증 환자(고도장애 및 중도장애) 자동차							10	증명서 등 입증 자료	
	③ 기타 장애인(4~6급, 시각장애 5.6급)용 자동차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(경도장애)의 자동차							5		
우대 가점 (공통)	친환경 자동차 (최대 5점)	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1등급 자동차 (환경부 배출가스 조화내역 제출) https://emissiongrade.mecar.or.kr/www/main.do					5	환경부 배출가스 조화내역 제출		
		자공에 등록 자동차(등록증상 '자공해', '하이브리드' 표시) 친환경 1등급 차량의 경우 자공해 등록 자동차 3점 중복점수 미인정					3	자동차등록증		
	다동이카드 소지자 자동차 (만 13세 이하 자녀 한정)				2자녀	3	주민등록표등본/ 다동이카드			
					3자녀 이상	5				
	만 65세 이상 고령자 소유 자동차 (단, 소유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일 것)							5	자동차등록증	
비 거주자	① 관내 사업 기간(재직자는 재직기간) 점수							20 이하	사업자등록증/ 재직증명서	
	사업 기간 (재직기간)	1년 미만	1년 ~2년 미만	2년 ~3년 미만	3년 ~4년 미만	4년 ~5년 미만	5년 ~10년 미만			10년 이상
	점수	3	5	7	10	13	15	20		
	※ 사업자는 관내 사업 개시일(재직자는 해당 업체 재직 시작일)을 기준으로하며 관내 사업 개시일 이전 입사자는 관내 사업 개시일부터 기간을 기산함.									
비 거주자	② 거리 점수(사업장 소재지와 주차구획의 거리 기준)							15 이하	공단 관리 프로그램	
	거리	10m 미만	10m ~30m 미만	30m ~50m 미만	50m ~100m 미만	100m 이상				
	점수	15	10	7	3		0			

※ 비교

- 장애인 특별 가점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물론 주민등록표 등본상 동일 세대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부여함(단, 가점을 동일 세대에 중복 부여하지 않음)
- 거리 점수는 공단의 거주자우선주차제 프로그램상 거리정보를 기준함.
- 위 배점표의 해석상 특히 필요하면 공단이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음.

2. 우선배정 제외 대상

- 가. 관련 법령상 차고지(주차장) 확보 의무가 있는 자동차
- 나. 동일 주소지(신청인)의 자동차를 2개 구획(전용구획 포함) 이상에 중복 배정하지 않음. ※ 중복 신청에 의한 배정 시 배정 여부를 불문하고 우리공단이 배정 취소 등 임의 처리하며 동일 주소지(신청인)로 2차량 이상 신청하면 1차량만 거주자로 인정하고 나머지 차량은 우선배정에서 제외함.

- 다. 주차장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타용도로 사용하는 자의 자동차
- 라. 불법 주차장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세 및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관련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의 자동차
- 마. 기타 관련 법령(조례 및 방침 포함) 등에서 정하는 경우
- 바. 우선배정 제외 대상자라도 배정 후 여유분 발생 시 '가'와 '나' 목의 경우 배정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 가능(단, 민원 발생 시 취소될 수 있음)

3. 배정(지정) 원칙

- 가. 주차장은 개별 구획 배정이 아닌 구간제(구간 공동 이용제)로 배정하며 이용기간은 6개월 단위로 함. 주차요금은 이용기간 요금을 선납해야 함.(단, 분납 신청 시 3개월 단위 분납 가능)
- 나. 주차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배정 취소하고 취소분은 후순위(또는 대기자)에게 배정함.
- ※ 주차요금 납부기한 위반 시 별도 예고 없이 배정 취소됨.
- 다. 거주자인 신청자가 직계 존비속(부부포함) 또는 형제자매의 소유 자동차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등에 신청하면 거주자로 간주함.(단, 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입증 시에 한함)
- 라.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된 자동차로 거주지 등에 신청하면 재직 증명서 등으로 사실 관계 확인 후 거주자로 배정함.
- 마. 개인운송사업자 자동차(개인택시, 2.5톤 미만의 개인용달 및 화물)가 거주자 소유인 경우 거주자로 간주함.
- 바. 공사 등으로 주차구획이 없어지거나 기타 사유로 이용 불가 시 대체 주차장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순으로 배정 중지하거나 취소함.(단, 타구간 여유분 발생으로 수시 배정 시 우선 배정 가능)
- ① 해당 구간 배정일이 늦은 자 ②배정 후순위자 중 저점점자
- 사.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자동차 변경 시 주차권을 교체해야 함.
- 아. 중도 이용 중지 시에는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모두 환불함.
- 자. 주차장은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.
- 차. 배정 후 차량 변경시 배점점수를 재산정하여 재배정하며, 차량 변경 전 부여되었던 가점을 인정받으려면 신청일로부터 10일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[단, 재배정 탈락 시 변경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(신청일로부터 말일까지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 10일)까지 이용가능]

- 카. 배정은 1가구 1차량(1대) 배정을 원칙으로 함.

4. 배정 취소 요건(우리공단 직권 취소)

- 가. 배정 후 주차요금 납부기한까지 주차요금을 미납한 경우
- 나. 주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
- 다. 신청서 허위(착오) 기재, 신청 관련 서류의 허위 등이 발견된 경우
- ※ 이 경우 배정 전·후를 불문하고 배정이 취소될 수 있음.
- 라. 공사 등으로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없어지는 경우
- 마. 그 밖에 이용자가 배정(지정) 원칙, 사용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
5. 그 밖의 주차장 사용 조건(유의 사항)

- 가. 주차권 미부착 시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단속(견인) 대상이 될 수 있음.
- 나.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으므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차량 훼손 및 도난은 우리공단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주차장 수탁 관리자인 우리공단에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없음.
- 다. 정당한 배정 차량, 이용기간, 지정 이용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다른 주차구간이나 지정 이용 시간 이외에 주차하면 단속(견인) 대상이 됨.
- 라. 신청 내용과 결과는 신청인이 확인해야 하며, 미확인(또는 누락)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(이용자)의 책임임.
- 마. 배정 여부는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.
- 바. 마포구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이용 신청한 자나 배정 받은 자는 모두 이 '배정기준 및 조건'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.
- 사. 주차장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고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함.
- 아. 그 밖에 이 '배정기준 및 조건'에 없거나 해석상 다툼이 발생하는 사항은 우리공단의 해석을 우선함.

6. 주차요금 기준(월정)

구분	전 일 (24시간)	주 간 (09시~18시)	야 간 (19시~익일08시)	비 고
거주자	4만원	3만원	2만원	일반구간 적용
비거주자	5만원	3만5천원	2만5천원	일반구간 적용
시설주차장	5만원	3만6천원	2만4천원	비거주자 구분 없음